

3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규제

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규제의 이해

| 구분 | 내용 |
|----------------|---|
|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아니 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계열 출자를 하여서는 아니 됨 |
|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됨 |
| 내부거래공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규모내부거래를 하려는 경우 또는 대규모내부거래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함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①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②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거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함 |
| 기업결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들이 공정거래법이 정하는 기업결합 행위를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함 |

1.1 상호출자의 개념

- 2개 이상의 독립된 회사가 서로 상대방 회사의 발행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
- 직접상호출자: 2개 회사의 상대방 회사에 대한 출자 ⇨ 공정거래법 제21조의 상호출자
- 간접상호출자: 3개 이상 회사 간의 순환형(출자가 고리형으로 연결된 형태) 및 복합형(출자가 여러 단계로 복잡하게 연결된 형태) 출자 ⇨ 공정거래법 제22조의 순환출자

1.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공정거래법 개정 전: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법 제31조 제1항]

✓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21.12.30) 이후 한국은행이 국내총생산액이 2천조원을 초과한다고 발표한 해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 [부칙 제4조] → '24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
기업집단 DL은 개정 전 기준에 따라 '22.5.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매년 지정)

1.3 상호출자의 금지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이하 'A')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이하 'B')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아니 됨 [법 제21조 제1항(본문)]
- 상호출자금지 규정을 회피하려는 목적의 탈법행위는 금지됨 [법 제36조, 시행령 제42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하도록하고, 그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해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제3호]
 - 자기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제4호]

▶ 예외

- ①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 전부의 양수 또는 ②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해당하는 경우 A가 B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있으나, 그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함. 단, B가 A의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 제21조 제1항(단서)-제2항]

※처분: 회사의 합병 등으로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된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 행사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거나 그 주식을 다른 금융기관 등에 신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호출자의 상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완전히 소유권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312 판결)

1.4 순환출자의 금지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계열 출자를 하여서는 아니 됨(이하 '계열출자') [법 제22조 제1항(본문 전단)]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국내 계열회사는 계열출자대상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를 하여서는 아니 됨(이하 '추가 계열출자') [법 제22조 제1항(본문 후단)]
3.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회피하려는 목적의 탈법행위는 금지됨 [법 제36조, 시행령 제42조]
 - ① 자기가 취득·소유하면 계열출자 또는 추가 계열출자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취득·소유하도록 하고, 그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해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제5호)
 - ② 자기가 취득·소유하면 계열출자 또는 추가 계열출자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제6호)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순환출자회사집단 내의 계열출자 대상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법 제24조]

▶ 예외

1. 계열출자회사가 「상법」 제418조제1항에 따른 신주배정 또는 제462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배당 (이하 "신주배정등")에 따라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중에서 신주배정등이 있기 전 자신의 지분을 범위의 주식,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회사 간 합병에 따른 계열출자는 제외 [법 제22조 제1항(본문 괄호)]
2. ① 회사의 합병·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②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③ 계열출자회사가 신주배정등에 따라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중에서 다른 주주의 실권 등에 따라 신주배정등이 있기 전 자신의 지분을 범위를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이 있는 경우, 계열출자 등을 할 수 있음.
 - ✓ ① ② 의 경우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개월, ③ 의 경우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1년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여야 함 .
 - ✓ 단,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한 다른 회사 중 하나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대상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제1항에 따른 계열출자로 형성되거나 강화된 순환출자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 제22조 제1항(단서)·제2항]

1.5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공정거래법 제37조 제1항]: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제2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제6호) 등
- 시정조치의 이행확보[공정거래법 제39조]
 - ① 시정조치 부과받은 날부터 법 위반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주식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 불가[제1항]
 - ②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날부터 해당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 불가[제2항]
- 과징금[공정거래법 제38조 제1항] : 주식 취득가액의 20% 이내에서 부과 가능
- 벌칙[공정거래법 제124조 제1항 제7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2.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금지

2.1 채무보증의 개념

- 채무보증 :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상호저축은행)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하는 보증 [법 제2조 제18호]
※ 여신 : 국내 금융기관이 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법 제2조 제19호]

2.2 채무보증의 금지

▶ 제한되는 대상 행위 (Don't)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됨 [법 제24조 (본문)]
2. 채무보증금지 규정을 회피하려는 목적의 탈법행위는 금지됨 [법 제36조, 시행령 제42조]
 - ①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 채무를 면하게 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병존적 채무인수)
 - ② 다른 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게 하는 대신 그 다른 회사 또는 그 다른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 (교차 채무보증)

▶ 예외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 [법 제24조 (본문 괄호)]
2. [법 제24조(단서) 제1호·제2호,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채무보증
 - 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된 채무보증
 - ✓ 주식양도 또는 합병 등의 방법으로 인수되는 회사의 인수시점의 채무나 인수하기로 예정된 채무 : 인수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하는 보증
 - ✓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를 분할인수함에 따라 인수하는 채무: 인수하는 회사의 계열회사가 하는 보증
 - ②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한 채무보증
 - ✓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본재나 그 밖의 상품의 생산과 기술의 제공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하는 대출 또는 이와 연계하여 다른 국내금융기관이 하는 대출에 대한 보증

- ✓ 해외에서의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의 수행 사업, 수출선박의 건조 사업, 용역수출 사업, 그 밖에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물품수출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이 하는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선수금환급보증·유보금환급보증·하자보수보증 또는 납세보증에 대한 보증
- ✓ 국내의 신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의 기업화와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의 구입 등 기술개발사업을 위해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에 대한 보증
- ✓ 인수인도조건수출 어음 또는 지급인도조건수출 어음의 국내 금융기관 매입 및 내국신용장 개설에 대한 보증
-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해외 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하는 외국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제3자 인수와 직접 관련된 보증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를 한 경우에 국내 금융기관이 해당 계열회사에 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회사가 구조개편을 위해 분할되는 경우에 그 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에 한 보증을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가 인수하는 것과 직접 관련하여 그 회사가 그 신설회사에 대해 하는 채보증

2.3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 [법 제37조 제1항] : 채무보증의 취소[제5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제6호] 등
- 과징금 [법 제38조 제2항] : 채무보증액의 20% 과징금 부과 가능
- 벌칙 [법 제124조 제1항 제8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3. 내부거래공시

3.1 적용대상회사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규모내부거래를 하려는 경우 또는 대규모내부거래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하고, 공시를 할 때 거래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법 제26조 제1항, 제2항]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①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②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거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함[법 제29조 제1항]

3.2 적용대상거래

- 대규모내부거래의 종류[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4조]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금(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함)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중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포함)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제1호 및 제2호에 포함되지 않는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부동산의 임대차거래를 포함)
 4.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 계열회사: 자연인인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된 자는 제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자회사인 계열회사[시행령 제33조 제2항]

- 대규모내부거래의 규모[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6조 제1항]
 1. 거래금액(상품·용역 거래의 경우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자신의 자본총계(공익법인의 경우 순자산총계) 또는 자본금((공익법인의 경우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함
- 대규모내부거래의 주요내용[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7조]
 1. 거래의 목적 및 대상
 2. 거래의 상대방
 3. 경쟁입찰·수의계약 등 계약체결방식(상품·용역 거래에 한정)
 4. 거래의 금액 및 조건
 5.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4. 기업결합

4.1 기업결합의 제한

- 누구든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9조 제1항 본문]

☑ 특수관계인[시행령 제14조 제1항]

-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 동일인관련자
-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 제한되는 대상 행위

-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 지위의 겸임(이하 "임원겸임")
- 다른 회사와의 합병
-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이하 "영업양수")
-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 제외대상
 -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와 동일인관련자 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법」 제530조의2제1항에 따른 분할에 따른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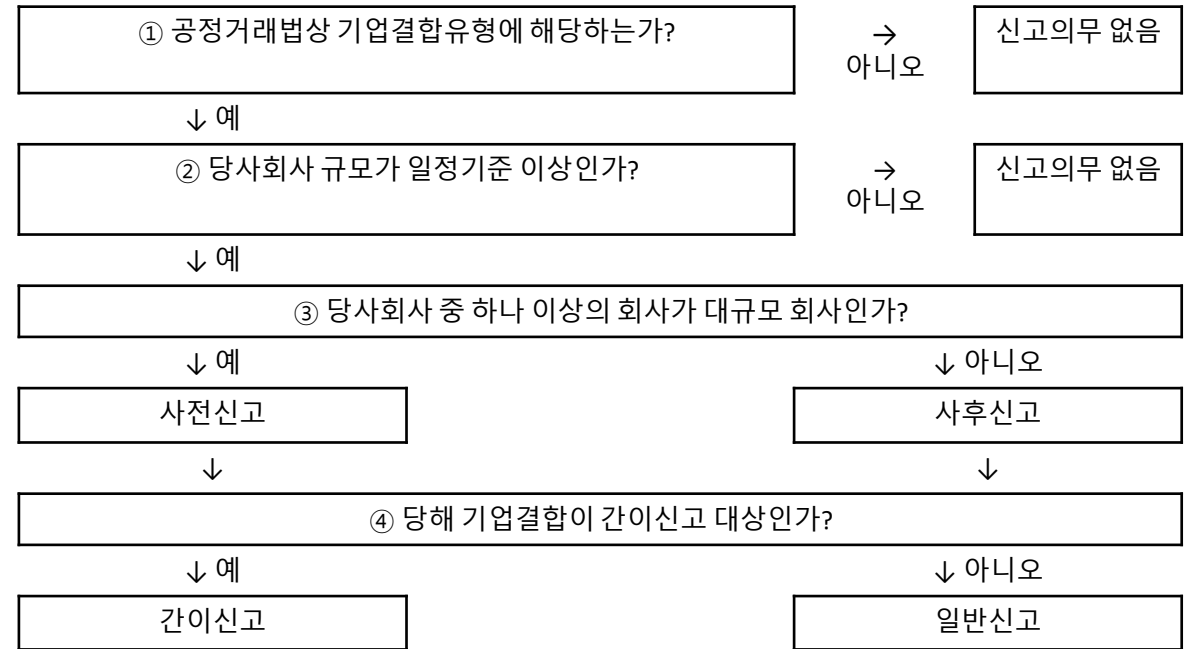
▶ 예외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 이상인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외의 자가 임원 겸임에 의한 기업결합 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9조 제1항 단서]
- 다음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법 제9조 제2항, 시행령 제16조]
 - 해당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피해보다 큰 경우
 - 상당한 기간 동안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해당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 해당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4.2 기업결합 신고의무

❖ 기업결합 신고 절차 흐름도



4.2.1 기업결합 유형

① 주식취득[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호]

-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의 20% (상장법인의 경우 15%) 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20% (상장법인의 경우 15%) 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그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

② 임원겸임[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대규모회사(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합계가 2조원 이상인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

③ 합병[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다른 회사와 신설·흡수·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④ 영업양수[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양수
-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임차
- 경영의 수입
-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

⑤ 새로운 회사설립 참여[법 제11조 제1항 제5호]

-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4.2.2 회사 규모

-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회사
- 상대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다른 회사
- 대규모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 이상인 회사
- 소규모피취득회사: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4.2.3 신고대상 행위

▶ [법 제11조 제1항]

1.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에 대하여 4.2.1의 ①~④의 신고대상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2.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4.2.1의 ⑤의 신고대상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3.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4.2.1의 ①~④의 신고대상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4.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4.2.1의 ⑤의 신고대상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 [법 제11조 제2항]

1.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소규모피취득회사에 대하여 4.2.1의 ①,②,④의 신고대상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소규모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4.2.1의 ⑤의 신고대상 기업결합을 할 때로서,

- ✓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당사회사가 자신의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지급 또는 출자하는 것을 포함)이 6천억 원 이상이고,
- ✓ 소규모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활용하는 등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 하는 경우

※ 상당한 수준 [시행령 제19조 제2항]

- ①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한 적이 있거나,
- ② 직전 3년간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계속 보유·활용해 왔고, 국내 연구시설, 연구인력 또는 국내 연구활동 등에 대한 연간 지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적이 있을 것

4.2.4 예외

▶ [법 제11조 제3항]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의 주식을 20% (상장법인의 경우 15%)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2. 「여성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 또는 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 사업투자조합이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의 주식을 20% (상장법인의 경우 15%)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신기술사업자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3.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i)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ii)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 또는 그러한 회사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 iii)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20% (상장법인의 경우 15%)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그 회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 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법 제11조 제4항]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미리 해당 기업결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경우

4.2.5 신고절차

- 신고시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제한대상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필요한 경우 90일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법 제11조 제6~7항, 시행령 제20조]

| 구분 | 당사회사 | 기업결합 유형 | 신고시기 |
|-------|------------|---------|---|
| 사전 신고 | 대규모회사 | 주식취득 | 계약일 등 이후 기업결합일 이전 |
| | | 합병 | |
| | | 영업양수 | |
| | | 회사신설 참여 | 주총(이사회) 의결일 이후 주식대금납입기일 까지 |
| 사후 신고 | 대규모회사 외의 자 | 주식취득 | 주권교부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 |
| | | 합병 | 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
| | | 영업양수 | 영업양수대금 지불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 | | 회사신설 참여 | 주식대금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 |
| | 대규모회사 | 임원겸임 |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사원)총회에서 선임의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 임의적 사전심사[법 제11조 제9~10항]

1. 기업결합을 하려는 자는 신고기간 전이라도 그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2.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필요한 경우 90일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 간이신고[기업결합의 신고요령]

1. 기업결합 신고의무자와 기업결합의 상대회사가 특수관계인(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2. 상대회사 임원총수의 3분의 1미만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다만,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4.3 기업결합 심사기준

❖ 기업결합 심사흐름도

1단계 간이심사대상 여부 판단

- 당사회사가 서로 특수관계인(경영 지배의 공동목적을 가지고 결합에 참여하는 자는 제외)인 경우
- 결합 이후 당사회사 간에 지배관계가 미형성되는 경우
- 대규모회사 외의 자가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거나 보완성 및 대체성이 없는 혼합결합에 해당하는 경우
- 경영목적이 아닌 단순투자활동이 명백한 경우
-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하여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것으로 통지받은 기업결합을 정식으로 신고한 경우
-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해외 합작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 예
경쟁제한
우려없음

↓ 아니오

2단계 관련시장의 획정

- 상품시장 / 지리적 시장

↓

3단계 시장점유율 산정 및 시장집중도 평가

- 안전지대 해당 여부 (허핀달-허쉬만지수, 이하 "HHI" 기준 충족)
-수평: HHI<1200, 1200≤HHI<2500(△<250), HHI≥2500(△<150)
(단, 법 제9조제3항 추정요건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수직/혼합: HHI<2500이면서 점유율 25% 미만 또는 각각 4위 이하 사업자

→ 예
경쟁제한
우려없음

↓ 아니오

4단계 경쟁제한성 평가

- 수평결합: 단독효과, 협조효과, 구매력 증대효과, 혁신저해효과
- 수직결합: 시장봉쇄효과, 협조효과
- 혼합결합: 잠재적 경쟁 저해, 경쟁사업자 배제, 진입장벽 증대

→ 아니오
경쟁제한
우려없음

↓ 아니오

5단계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 해외경쟁이 충분히 도입될 수 있는가?
- 신규진입이 단기간에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가?
- 유사품이나 인접시장이 존재하는가?
- 강력한 구매자가 존재하는가?

→ 예
경쟁제한
우려없음

↓ 아니오

6단계 효율성 효과 및 회생불가회사 항변 검토

- 효율성 증대가 경쟁제한효과보다 큰가?
- 기업결합이 아니고는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인가?

→ 예
경쟁제한
우려없음

↓ 아니오

시정조치

4.3.1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기업결합 심사기준 Ⅱ.1.항 및 Ⅲ.항]

-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 → 원칙적으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만을 심사하여 적법한 신고서류의 접수후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

- 당사회사가 서로 특수관계인(경영 지배의 공동목적을 가지고 결합에 참여하는 자는 제외)인 경우
- 결합 이후 당사회사 간에 지배관계가 미형성되는 경우

☑ 지배관계 판단기준[기업결합 심사기준 IV.항]

| 유형 | 지배관계 판단기준 |
|------------|---|
| 주식취득 또는 소유 | 1. 단독 지배관계 형성 ① 주식소유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② 주식소유비율이 50% 미만이나, 경영 전반에 실질적 지배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 ① 각 주주의 주식소유비율, 주식분산도, 주주 상호간의 관계 ② 피취득회사가 그 주요 원자재의 대부분을 취득회사 등으로부터 공급 받고 있는지 여부 ③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 간의 임원겸임관계 ④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 간의 거래.자금.제휴관계 등의 유무 2. 공동 지배관계 형성 ① 단독 지배관계는 없으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피취득회사의 경영 전반에 실질적 지배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 ① 주식 또는 의결권의 보유비율 ② 임원의 지명권 보유여부 ③ 예산, 사업계획 등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 보유여부 ④ 의결권의 공동행사 약정 존재여부 ⑤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 행정권한 보유여부 |
| 임원겸임 | 1. 상대회사의 경영 전반에 실질적 지배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 ① 취득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피취득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고 있는 자의 수가 피취득회사의 임원총수의 1/3이상인 경우 ② 겸임자가 피취득회사의 대표이사 등 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겸임하는 경우 |
| 회사설립 | 1. 합작회사에의 참여회사 중 2 이상 회사가 신설회사에 대해 지배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업결합 당사회사와 신설회사 간의 지배관계 형성여부는 주식소유에 대한 지배관계 판단기준을 준용 |

- 대규모회사 외의 자가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거나 보완성 및 대체성이 없는 혼합결합에 해당하는 경우
- 경영목적이 아닌 단순투자활동이 명백한 경우
-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하여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것으로 통지받은 기업결합을 정식으로 신고한 경우
- 피취득회사가 외국회사이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

4.3.2 관련시장 확정

▶ 관련시장

- 당해 기업결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
 - ① 상품시장: 소비자가 상품의 특성·가격·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집합
 - ② 지리적 시장: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 중 경쟁조건이 동질적이어서 인접지역과 구별될 수 있는지역

4.3.3 시장점유율 산정 및 시장집중도 평가

① 시장점유율 산정

- 다음의 경우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 [법 제9조 제3항]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①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또는 3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미만인사업자는 제외)
 - ② 기업결합 당사회사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 거래분야에서 1위가 되는 경우
 - ③ 당사회사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2위인 회사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시장점유율 합계의 25%이상인 경우
 - 대규모회사가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3 이상인 거래분야에서 기업결합을 하고 당해 기업결합으로 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되는 경우

② 시장집중도 평가[기업결합 심사기준 VI. 1.항]

- 다음의 경우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 안전지대
 - 수평형 기업결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등이 법 제9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① 허핀달-허쉬만지수(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각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 이하 "HHI")가 1,200에 미달하는 경우
 - ② HHI가 1,200 이상이고 2,500미만인 경우 HHI 증가분이 250미만인 경우
 - ③ HHI가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미만인 경우
 - 수직형 또는 혼합형 기업결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HHI가 2,500미만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25/100 미만인 경우
 - ②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

☑ 기업결합의 유형

- ✓ 수평형 기업결합: 동일 시장 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
- ✓ 수직형 기업결합: 상품의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
- ✓ 혼합형 기업결합: 수평형/수직형 외의 기업결합(생산품목 간에 연관관계가 없는 회사간의 결합)

4.3.4 경쟁제한성 평가

① 수평형 기업결합[기업결합 심사기준 VI. 2.항]

1. 단독효과: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통제·경쟁배제능력 등을 보유·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①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폭 및 경쟁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
 - ② 결합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간 수요대체가능성의 정도 및 동 제품 구매자들의 타 경쟁사업자 제품으로의 구매 전환가능성
 - ③ 경쟁사업자의 결합당사회사와의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증대의 용이성
2. 협조효과: 사업자간에 가격·수량·거래조건 등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협조행위가 이루어지기 용이해지는지 여부
 - ① 경쟁사업자간 협조의 용이성
 - ② 이행감시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
3. 구매력 증대에 따른 효과: 당사회사가 원재료 시장과 같은 상부시장에서 구매자로서의 지배력이 형성 또는 강화되어 구매물량 축소 등 경쟁제한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① 판단기준 준용
4. 혁신저해 효과: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가 연구개발 등 혁신활동을 감소시킬 유인 및 능력을 보유하는지 여부
 - ① 결합당사회사가 관련 분야에서 중요한 혁신사업자인지 여부
 - ② 과거 및 현재 결합당사회사가 수행한 혁신활동의 근접성 또는 유사성
 - ③ 기업결합 이후 실질적으로 혁신경쟁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수가 충분한지 여부
 - ④ 결합당사회사와 경쟁사업자 간 혁신역량의 격차
 - ⑤ 결합당사회사 한 쪽이 혁신활동을 통하여 다른 쪽의 상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사업자인지 여부

② 수직형 기업결합[기업결합 심사기준 VI. 3.항]

1. 시장의 봉쇄효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구매선 또는 판매선을 봉쇄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할 수 있는지 여부

- ① 원재료 공급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시장점유율 또는 원재료 구매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구매액이 당해시장의 국내총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② 원재료 구매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시장점유율
 - ③ 기업결합의 목적
 - ④ 수출입을 포함하여 경쟁사업자가 대체적인 공급선판매선을 확보할 가능성
 - ⑤ 경쟁사업자의 수직계열화 정도
 - ⑥ 당해 시장의 성장전망 및 당사회사의 설비증설등 사업계획
 - ⑦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의한 경쟁사업자의 배제가능성
 - ⑧ 당해 기업결합에 관련된 상품과 원재료의존관계에 있는 상품시장 또는 최종산출물 시장의 상황 및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
 - ⑨ 수직형 기업결합이 대기업간에 이루어지거나 연속된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시장진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대하는 등 다른 사업자가 당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지 여부
2. 협조효과: 경쟁사업자간의 협조 가능성 증가 여부
 - ① 결합이후 가격정보 등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입수가 용이해지는지 여부
 - ② 결합당사회사중 원재료구매회사가 원재료공급회사들로 하여금 협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유력한 구매회사였는지 여부
 - ③ 과거 당해 거래분야에서 협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

③ 혼합형 기업결합[기업결합 심사기준 VI. 4.항]

1. 잠재적 경쟁의 저해
 - ① 상대방 회사가 속해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진입하려면 특별히 유리한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지 여부
 - ② 당사회사중 하나가 상대방 회사가 속해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대해 잠재적 경쟁자인지 여부
 - ③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및 시장집중도 수준
 - ④ 당사회사 이외에 다른 유력한 잠재적 진입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2. 경쟁사업자의 배제: 당해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의 자금력, 원재료 조달능력, 기술력, 판매력등 종합적 사업능력이 현저히 증대되어 당해상품의 가격과 품질외의 요인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진입장벽의 증대: 당해 기업결합으로 시장진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가하는 등 다른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지 여부

④ 정보자산 수반 기업결합[기업결합 심사기준 VI. 5.항]

1. 결합을 통하여 얻게 되는 정보자산이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대체하기 곤란한 지 여부
2. 해당 결합으로 인하여 결합당사회사가 경쟁사업자의 정보자산 접근을 제한할 유인 및 능력이 증가하는지 여부
3. 결합 이후 정보자산 접근 제한 등으로 인하여 경쟁에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지 여부
4. 결합당사회사가 정보자산의 수집·관리·분석·활용 등과 관련한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 비가격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여부

4.3.5 경쟁제한성 완화요인[기업결합 심사기준 VII.항]

①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1.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수입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당사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현저히 높고 당해 상품에 대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상당한 경우
3. 경쟁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높고 기업결합후 당사회사의 국내 가격인상 등에 대응 하여 수출물량의 내수전환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② 신규진입의 가능성

1.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한 정도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2. 법적제도적인 진입장벽의 유무, 필요최소한의 자금규모,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생산 기술조건, 입지조건, 원재료조달조건, 경쟁사업자의 유통계열화의 정도 및 판매망 구축비용, 제품 차별화의 정도 등 고려

③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1. 기능 및 효용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 생산기술의 발달가능성, 판매경로의 유사성 등 그 유사상품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고려
2. 거래지역별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 시장간의 지리적 근접도, 수송수단의 존재 및 수송기술의 발전가능성, 인접시장에 있는 사업자의 규모 등 인근 지역시장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고려

④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1. 결합 당사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자가 기업결합 후에도 공급처의 전환, 신규 공급처의 발굴 및 기타 방법으로 결합기업의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때 (그 효과가 다른 구매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

4.3.6 항변 검토[기업결합 심사기준 VIII.항]

1. 효율성 증대효과 :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 ① 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
 - ②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며, 단순한 예상 또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 발생이 거의 확실한 정도임이 입증될 수 있을 것
2. 희생이 불가한 회사 : 회사의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로서
 - ①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 ②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4.4 위반시 제재

4.4.1 시정조치[법 제14조 제1항,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 제한대상 기업결합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유형 | 내용 |
|--------|---|
| 구조적 조치 | 결합당사회사의 자산이나 소유구조를 변경시키는 시정조치 ① 금지조치: 해당 기업결합 전체를 발생할 수 없게 하거나 이미 발생한 기업결합을 원상회복시키는 조치 ② 자산매각조치: 결합 당사회사의 자산을 결합 당사회사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인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조치 ③ 지식재산권 조치: 결합당사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지식재산권의 소유 또는 사용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조치 |
| 형태적 조치 | 일정 기간을 정하여 결합당사회사의 영업조건, 영업방식, 영업범위 또는 내부경영활동 등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시정조치 |

4.4.2 이행강제금[법 제16조]

- 시정조치를 정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 가능

| 기업결합 유형 | 이행강제금 부과 범위 | |
|--------------|---|------------------------|
| 주식취득 회사설립 |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 각 금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 |
| 합병 | 합병의 대가로 지급하는 주식의 장부가격 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 |
| 영업양수 | 영업양수금액 | |
| 임원겸임 | 1일당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부과 가능 | |

4.4.3 기업결합 완료행위의 금지[법 제11조 제8항]

-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 후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는 기업결합 완료행위(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주식인수행위) 금지

4.4.4 설립무효의 소 제기[법 제14조 제2항]

- 제한대상 기업결합행위 또는 심사결과 통지 전 기업결합 완료행위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합병 또는 설립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4.4.5 과태료[법 제130조 제1항 제1호]

-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거짓의 신고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각각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